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2
----------	-----

2019년 3월 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10월 17일, 김창원 의원 (찬성자 40명)
-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9년 3월 4일 상정, 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창원 의원)

### 가. 제안이유

- 스마트폰과 전자기기의 대중화로 시민들이 보행 중에도 각종 전자기기를 이용하면서 보행자와 보행자간의 충돌 및 각종 사고로 이어지면서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청계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행정지도 사항에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행위’를 포함하고,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행위를 행정지도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11조제1항제9호 신설).
-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 설치의 의무화(안 제11조제2항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4.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 개요

- 본 개정안은 보행 중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를 이용하면서 보행자 간의 충돌 등의 사고가 이어져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 청계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행위를 본 조례 제11조1)에 따른 행정지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청계천 출입구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행정지도) 시장은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1. ~ 8. (생략) <u>&lt;신설&gt;</u>  <u>&lt;신설&gt;</u>	제11조(행정지도) ①  1. ~ 8. (현행과 같음) 9.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청계천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제11조(행정지도) 시장은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1. 낚시행위 및 유어행위
  2. 수영·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3.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4. 흡연행위 및 음주행위
  5. 노숙행위 및 영업행위
  6.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행위 및 방뇨행위
  7.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이용행위 (다만, 장애인·유아·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청소·공사·보수 등 청계천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동물동반 출입행위(다만,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예외로 한다)

## ■ 주요 골자별 의견

### 가. 행정지도 사항에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행위 추가의 건 (안 제11조제1항제9호)

- 안 제11조제1항제9호는 현행 조례 제11조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행정지도<sup>2)</sup> 대상에 ‘청계천 내 보행자가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임.
-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 시 휴대전화 또는 영상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sup>3)</sup>되는 등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고,
- 지난 3월 7일 서울시의회는 보행환경 개선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sup>4)</sup>(의안번호 제

#### 2) 행정지도의 정의

-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 행정지도는 다변하는 행정 분야에 실효적이라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그 주체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강제력을 무시할 수는 없고, 다수설에서는 행정지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므로 작용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인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음.

(자료 :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6,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17.6.12 - 상정일 : '17.11.23 - 상정 결과 : 소위원회 회부
- 주요내용 :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 시에는 휴대폰, 영상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검토의견 : 보행자의 주의를 분산되고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금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4)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③ 생략

④ 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신설 2018.3.22.>

2381호, 공동발의 김창원 의원 외 24인)를 개정하여 시민의 의무 사항에 “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를 추가한 바 있음.

- 또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sup>5)</sup>를 살펴보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소리로 사물을 인지하는 거리를 40~50% 감소시키고 전방 주시율은 15% 정도 떨어뜨리는 등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에 청계천 내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타인의 보행을 방해할 경우 행정지도를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이용객의 보행안전사고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청계천 내 보행구간이 일반 산책로에 해당한다고 볼 때 다른 산책로와 차별화하여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지도할 경우 또 다른 민원 발생 소지도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현재 청계천 운영·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 내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한 민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또한,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와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임.

---

5) 이수일·김태호(2016),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시 시각 인지특성 연구”,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 연구소

## 나. 행정지도 대상 행위 안내표지판 설치 건(안 제11조제2항)

- 안 제11조제2항은 청계천 내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 표지판을 청계천 출입구 등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청계천 이용 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명시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이용객의 주의를 유도하고 시민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됨.
- 다만, 안내표지판의 설치는 시민들이 쉽게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의 시인성, 가시성, 가독성 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이용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 개정안 제11조제1항제9호는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와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함.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82
----------	-----------

제안일자 : 2019년 3월 4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정안 제11조제1항제9호는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와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행위를 행정지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제9호)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행정지도) 시장은 시 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1. ~ 8. (생략) <u>&lt;신설&gt;</u>  <u>&lt;신설&gt;</u>	제11조(행정지도) ① ----- ----- -----  1. ~ 8. (현행과 같음) <u>9.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u> <u>② 시장은 제1항의 행정지 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 내표지판을 청계천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u>	제11조(행정지도) ① (개정 안과 같음)  1. ~ 8. (개정안과 같음) <u>&lt;삭제&gt;</u>  ② (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청계천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행정지도) 시장은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p> <p>1. ~ 8.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11조(행정지도) ① _____            _____            -----.</p> <p>1. ~ 8. (현행과 같음)</p> <p><u>② 시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청계천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u></p>